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65호 2013. 3. 27 (수요일)

조 례

- | | | |
|-----------------|--|----|
| ○ 하동군 조례 제1998호 | 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 | 2 |
| ○ 하동군 조례 제1999호 |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 | 3 |
| ○ 하동군 조례 제2000호 | 하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11 |

규 칙

- | | | |
|-----------------|-------------------------------------|----|
| ○ 하동군 규칙 제1085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 . | 17 |
|-----------------|-------------------------------------|----|

고 시

- | | | |
|---------------------|------------------------------------|----|
| ○ 하동군 고시 제2013- 15호 | 검두지구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에 관한 고시 | 19 |
| ○ 하동군 고시 제2013- 16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37차) | 20 |

공 고

- | | | |
|---------------------|---|----|
| ○ 하동군 공고 제2013-222호 | 제1회 하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 22 |
| ○ 하동군 공고 제2013-223호 |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 26 |

회 람									
----------------	--	--	--	--	--	--	--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3년 3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1998호

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

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3년 3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1999호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노후·불량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동다움의 경관 조성과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 농어촌주택의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일반농어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을 제외한 농어촌 주택을 말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붕 개량의 지원대상은 낡고 헐었거나 노후된 농어촌주택으로서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희망하는 경우로 한다.

② 농어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1가구당 1회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제외) ① 제3조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 365 호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5조(지원기준)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따른 가구당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일반농어가 : 지붕 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50퍼센트를 지원 하되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 지붕 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전액을 지원하되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개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3조·제4조·제5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 폐기물처리 등의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슬레이트 지붕개량 완료 신고서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붕 개량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우선지원)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사업계획 전년도 7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익년도 지원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보조금관리
조례」 및 「하동군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6) 제 365 호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신청서

건축물 현 황	대지위치			
	지역/지구		건축년도	
	건축구조		건축용도	
	건축면적(m ²)		사용여부	<input type="checkbox"/> 사 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소유자 현 황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지원신청 내 용	<input type="checkbox"/> 주거용 건물 : 동 m ² <input type="checkbox"/> 부속 건물 : 동 m ² (부속사, 창고, 축사 등 명칭 기재 바랍니다)			
----------------	--	--	--	--

전경사진				
------	--	--	--	--

읍·면 확인결과	- 제3조 해당여부 :	-제4조 해당여부 :
	- 제5조 해당여부 :	-제7조 해당여부 :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토지 사용 승낙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 업 량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기간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4. 보조금액 및 산출기초

○ 총사업비 : 천원(보조: 자부담:)

○ 산출기초 :

○ 보조금액 :

5. 보조금의 사용 방법 :

○

6. 보조금 이외의 사업비 부담방법

○ 성 명 :

○ 금 액 :

○ 방 법 :

7. 보조 사업의 효과

○

[별지 제5호 서식]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폐기물 처리 확인서

소유자 현 황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여()
	주 소		연 락 처	
	반입 폐기물량	(m ³)	처리 폐기물량	(m ³)

폐기물처리
전경사진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업 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자 :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3년 3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00호

하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군수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 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중의 사고, 건너는 도중의 사고, 발을 잘못 던져 다치는 경우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 부터 8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군수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군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의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 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기초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관리지역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 특전동지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민방위대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군수가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 동 군 공 보

(14) 제 365 호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소방서와 협의하여 고정배치
 2. 제1호 이외의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우천 등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14조(복제)**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17조(모집·선발)** 군수는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 모집한다.
-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전담 대책팀 구성·운영
-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 3. 상황보고체계
-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 6. 대군민 홍보계획
-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휴일비상근무) ①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라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경상남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은 군수가 제22조에 의한 현장 조사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에 의해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예산 및 홍보

제25조(안전시설 설치비)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홍보)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 군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2. 전광판
3. 휴대전화 문자 및 스마트폰 등
4. 군 홈페이지, 인터넷 등
5. 현수막, 군 소식지, 전단지
6. 차량이용방송
7.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보 및 경보시설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3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085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 1] 의 징계기준의 비고란 본문을 제1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액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된 징계 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하 동 군 공 보

(18) 제 365 호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1.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2.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하동군 고시 제 2013- 15호

검두지구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에 관한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검두지구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3. 27.

하 동 군 수

1. 사업지구의 명칭 : 검두지구
2.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75번지일대(검두마을)
 - 나. 면적 : 75,930m²(177필지)
3. 사업기간과 지적공부정리 등이 정지되는 기간
 - 가. 정지내용 :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 정지
 - 나. 정지기간 : 2012. 10. 08 ~ 2014. 10. 08
4.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 하동군청 민원과 지적담당(☎ 055-880-2093)

하동군 고시 제2013 - 1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37차)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3. 26.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산성길 34 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1-26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57-1	20070618	진교의 연원(淵源)을 적용한 민다리길 안쪽에 위치한 길이라 하여 민다리안길로 명명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869-1	하동군 진교면 고이길 184-440	20070618	고이라는 법정리명을 반영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55-3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156-22	2007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부여
하동군 적량면 동리 1011-1	하동군 적량면 이정길 58	20070618	이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543-128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290-20	20070619	금성면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면이름에서 부여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308-4	하동군 옥종면 산성길 34	20080402	뒷산에 오래된 산성이 있는데 이 산성아래 위치한 마을이라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1211	하동군 옥종면 양이터길 101	20080402	임지왜란때 양씨와 이씨가 피란하였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산75-3	하동군 옥종면 두양길 118-28	20080402	두방산과 두방재 아래에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388	하동군 진교면 금오산길 67	20090302	금오산의 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산131-1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218	20090710	2번 국도의 일부로서,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733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874-46	20090710	19번 국도의 일부로서, 섬진강을 따라 형성된 도로로 지역명 반영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421-9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38	20110621	평사리란 도로명을 사용하여 조상의 얼과 전통성을 유지하고자 평사리길로 명명

하동군 공고 제2013-222호

제1회 하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2013년도 제1회 하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3. 3. 22 .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직무내용	근무부서
투자유치	지방전입 계약직 "다"급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조선 등 관련산업 투자유치 프로젝트 수립 추진 국내·외 잠재 투자자 발굴 및 마케팅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입주지원 투자유치 홍보자료 수집 및 관리 조선 등 관련산업 분야 연계 발전모델 구축 	남해안개발과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지역·연령·성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채용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투자유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p>※ 직무관련 학과(학위) : 인문·사회·경제·공학·자연계열 학과 (예·체능계 등 제외)</p> <p>※ 우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근무경험이 있는 자 · 근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국·내외 기업 -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이상 연수(학위취득 포함) 또는 근무경험자 (학교, 기업, 공공기관·단체) - 외국어 능통자 우대 · 영어 : TOEIC 800점, TOEFL(IBT) 94점, TEPS 695점, 서울대·한국외대·부산외대 어학검정 70점 이상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3. 법률적 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 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대통령령 제23081호)
- 다.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9호)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함

가.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봉급 한계표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결 정 액
“다” 급	50,098천원	35,580천원	신규채정시 하한액 적용

나. 체수당 별도 지급

5. 채용(계약)기간 : 2년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 적격성 검증

7. 시험일정(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변경될 수 있음)

하 동 군 공 보

(24) 제 365 호

구 분	공 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일자(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남해안개발과 (투자유치)	2013.3.22(금)	2013. 4. 3(수)~ 4. 5(금) ※기간중 업무시간내 (09:00~18:00)	2013.4.10(수)	2013.4.15(월) ~ 4.16(화)	2013.4.19(금)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시<http://hadong.go.kr/main/>

8. 응시원서 교부 · 접수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담당(2층)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9.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다”급 7,000원 상당의 하동군 수입증지 (하동군청 민원과 판매)
 -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군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됨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학력, 자격, 상훈, 경력, 저술, 강의 등 마지막 부분에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10.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 합산 결과)
-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http://hadong.go.kr/main>)

11.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을 취소함
-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 특히, 제출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 포함)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음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를 하지 않음
-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이상으로 선발함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 하동군 행정과(행정담당 ☎880-2153)로 문의하시기 바람.

하동군 공고 제2013 - 233호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26일

하 동 군 수

1. 제안사유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위원회의 기능

지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라.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마. 회의참석 수당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 : 667-805,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 산림녹지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055-880-2483),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산림녹지과 담당자 오성택(☎055-880-24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과 하동군 지역주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하동군 산림재해담당이 되고, 서기는 산림재해 업무담당이 된다.
-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군수에게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2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안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30) 제 365 호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

제○차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년 제○차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결과보고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장

하 동 군 공 보

(32) 제 365 호

○○년 제○차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년 ○○월 ○○일(○요일)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 참석위원 명단 작성
- 심의안건별 심의결과

안건번호	소 재 지			지정대 상면적 (㎡)	심 의 결 과				비고
	읍·면	리	지번		원안 가결	조건부 가결	심의 보류	부결	

2. 세부 심의결과(원안가결 제외)

- 조건부 가결 : ○○건
 - 안건번호 : 제20 -○호(소재지 : ○○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 안건번호 : 제20 -○호(소재지 : ○○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 심의 보류 : ○○건
 - 안건번호 : 제20 -○호(소재지 : ○○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 안건번호 : 제20 -○호(소재지 : ○○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 부 결 : ○○건
 - 안건번호 : 제20 -○호(소재지 : ○○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부결사유 :
 - 안건번호 : 제20 -○호(소재지 : ○○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3. 금후조치계획

- 원안가결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공고 및 산주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월○일까지)
- 조건부가결 개소의 조건충족 조치 및 심의보류 개소에 대한 보완 등 조치(○월○일까지)
- 이의신청 처리 및 확정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월○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의결서

년 제○차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심의번호	심의안건	의결사항
제○○○○-○○호	○○읍·면 ○○리 ○○번지(지목 :) ○,○○○m ²	

※ 의결사항은 원안가결(지정),조건부(조건부 지정), 보류, 지정제외(부결) 등 4개 중 하나 기재

년 월 일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 원 장 ○ ○ ○ (서명)
 부위원장 ○ ○ ○
 위 원 ○ ○ ○

하 동 군 공 보

(34) 제 365 호

[별지 제3호서식]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결과

1. 심의 번호 : 제○○○○-○호

2. 심의 대상지

- (1) 소 재 지 : ○○읍·면 ○○리 산○○번지(지목 :)
- (2) 지정 면적 : ○○○m²
- (3) 피해 유형 : 산사태·토석류
- (4) 위험 등급 : I, II, III, IV등급
- (5)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3. 심의 결과

심 의 항 목	심의결과		
	적정	보완	부적정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4. 심의위원 의견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번 호	제 〇〇〇〇 - 〇호	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제〇차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하동군 〇〇읍면 〇〇리 산〇〇번지 등 〇〇개소)

제 안 자	하 동 군 수
제출년월일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자료

1. 심의 번호 : 제○○○○-○호

2. 의결 주문 : 원안가결

3. 심의 대상지

(1) 소재지 : ○○읍·면 ○○리 산○○번지(지목 :)

(2) 지정 면적 : ○○○㎡

(3) 피해 유형 : 산사태·토석류

(4) 위험 등급 : I, II, III, IV등급

(5)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6) 대상지 조사결과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 실시사항

○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방 공법의 적정성

○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사유 등

○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4. 검토 종합의견

○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5. 참고사항 :

- 붙임 1. 취약지역 판정표(산사태, 토석류), 위치도 및 사진 1부.
 2.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1부.
 3.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끝.

하 동 군 공 보

(38) 제 365 호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

일 반 정 보	조 사 자	소 속		직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12년 월 일				
	위 치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GPS좌표	위도(° ' "), 경도(° ' ")				
○유역면적		ha					
인 자	Category 별 점수						
	1	2	3	4	5	점 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 ~ 5미만	인가5 ~ 10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50	300	330	360		
황폐 발생원	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 이하인 유역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 이상인 유역	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	0	80	96	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	10% 미만	10 ~ 20	20 ~ 30	30이상			
점 수	0	10	40	18			
계류 상부 경사(°)	9 미만	9 ~ 13	14 ~ 18	19이상			
점 수	0	10	28	54			
총 계류 길이(m)	200 미만	200 ~ 500	500이상				
점 수	0	28	74				
계류평균 경사(°)	5 미만	5 ~ 7	8 ~ 10	11 ~ 16	16 이상		
점 수	0	16	32	48	6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사방댐()개소, 계류보전()km			대피장소			

토 석 류 취 약 지 역 위 치 도

토 석 류 취 약 지 역 사 진

하 동 군 공 보

(40) 제 365 호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

일 반 정 보	조 사 자	소 속	직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12년 월 일			
	위 치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GPS좌표	위도(° ' "), 경도(° ' ")			
	○유역면적		ha			
인 자	Category 별 점수					
	1	2	3	4	5	점 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 ~5미만	인가5 ~ 10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00	200	220	240	
경사길이 (m)	50이하	51-100	101-200	201이상		
점 수	0	19	36	74		
모 암	퇴적암 (이암,혈암, 석회암 사암등)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	0	5	12	19	56	
경사위치	0-4/10	5-6/10	7-10/10			
점 수	0	9	26			
임 상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	18	26	0			
사면형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점 수	0	5	12	23		
토심(cm)	20이하	20-100	101이상			
점 수	0	7	21			
경사도(°)	25이하	26-40	41이상			
점 수	16	9	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탄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산지사방()ha		대피장소			

산 사 태 취 약 지 역 위 치 도

산 사 태 취 약 지 역 사 진

산사태 및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판정 기준

산 사 태 취 약 지 역 등 급	점 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80~24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80점 이하

토 석 류 취 약 지 역 등 급	점 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120~36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120점 이하